



휴머니아페이 협업 계약서

(상품 모집 · 관리 계약용)

휴머니아테크(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트너스(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휴머니아페이 서비스 상품 모집 · 관리 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 용역의 내용

‘을’은 ‘갑’이 수행하는 ‘휴머니아페이 서비스 상품(이하 “서비스”라 한다)’ 중 ‘임대료 (자동) 납부 회원’ 모집업무, 임대차 계약만기 사후관리, 임대료(월세) 납부를 위한 임대인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 등을 수행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② ‘파트너스’는 ‘갑’의 서비스를 위해 회원모집 등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③ ‘휴머니아페이(Humaniapay) 서비스’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납부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월)정기 자동납부
 - ㉠ 매월 임대료 등 납입일에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사전 납부 안내 후에 자동으로 임대료 등을 카드 납부하는 방식
 - ㉡ 임대차 계약관리, 임대료 미납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선택) 1회성 납부

회원이 필요시 임대료 등을 1회성으로 카드 납부하는 방식
- ④ ‘서비스 이용수수료’란 회원들이 휴머니아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갑’에게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이용수수료는 부담주체는 납부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1. (월)정기 자동납부 : 임차인 · 임대인
 2. (선택) 1회성 납부: 임차인
- ⑤ ‘가맹점’은 신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임대인 본인이 가입하고 임대료 등을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 ① '모바일 (Web)App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신청 안내 및 모집 업무 (필요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게 하는 업무 포함)
- ② 임대료 등 신용카드의 결제를 위하여 임대인(사업자)을 PG사의 가맹점으로 가입 등록할 업무(계좌이체 방식인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업무도 동일)
- ③ 임대차 계약만기 등 사후관리 업무
- ④ 서비스 상품 연계 별도로 '갑'이 정한 부가서비스 업무 등

제4조 서비스 가입승인

'갑'은 '을'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모집된 회원들의 제 정보 사항 및 서류를 확인하고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제5조 수수료 지급

- ① '갑'은 '을'이 서비스 안내 및 모집한 회원 가입신청 및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회원에 대하여 임대료의 납부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지급합니다
- ② 수수료 지급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납부결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③ 본 조 제②항의 수수료 지급은 (법인)기업카드 결제로 지급하며 '을'은 협업 계약서 체결 전에 '갑'이 지정한 PG사의 가맹점으로 가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 등은 '을'이 부담합니다.
- ④ 본 조 제③항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 기업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당월 발생한 거래금액에 근거하여 익월 10일 전에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세금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을'에게 지급합니다.
- ⑤ 본 조 제①항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수수료'와 '일정률'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6조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 ① '을'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갑'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원모집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업무에 관한 기밀 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을'은 서비스 상품 회원모집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을'은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임대 물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을'은 서비스 가입시 가입 등록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입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을 대신하여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제 징구 서류의 위·변조여부 및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을'은 모집한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미미서류 등 흠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완료 후에도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을'은 서비스 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로 임대료 자동납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을 사업자로 하여 PG사 서브 가맹점으로 가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을'은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본인이외의 제3자로부터 신용 카드 등으로 임대료 등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시행령 10조)에 따라 '제3자 자동납부 이용 동의'(별첨 참조)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 ①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갑'은 본 조 제①항, 제②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SMS) 등을 이용하여 해지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합니다.
 1.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을 '갑'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4. '갑'의 사정으로 '을'의 모집활동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5. '을'이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장기무실적 등으로 회원모집 업무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7. '을'이 본인의 사망 또는 해산, 파산선고, 능력의 상실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모집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을’이 즉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갑’은 해지 후 3영업일 이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 발생 시 관할법원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2조 계약서의 보관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를 ‘갑’이 전자매체로 보관하거나 ‘갑’과 ‘을’이 계약내용 출력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머니아페이 ‘임대료 (자동)납부’ 회원모집 등과 관련하여 상기 계약 내용에 이의가 없고 동의한다면 ‘갑’과 ‘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계약서는 2025 년 05 월 01 일부터 적용됩니다.

20 년 월 일

“갑” 휴머니아페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61, 340호
(당산동 5가, 유경빌딩)

휴머니아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상 훈 (인)

“을”

주소

상호
대표

(인)